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창원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시행령에 따라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,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고 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「도시공원법」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인 조례로 정한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

상위법에서 규정한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,

동물놀이터 설치와 관련한 법 해석 상의 혼란을 막아,

천만도시 서울에서 시민 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과

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

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

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

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